

# 모델 06

## 물품취급 수수료 면제 활용 모델 (한-미 FTA)

### 01 | 개요

- 한-미 FTA 제2.10조에 따라 기존에 징수해 왔던 비관세 행정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모델
  -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는 별도로 물품취급수수료를 미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여 추가 비용 발생

### 02 | 비즈니스 모델

- 원산지를 인정받게 되면 세율이 0%인 물품의 경우에도 물품취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이점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 관세청이 관련 법규의 준수도 심사 명목으로 관세와 관계없이, 건당 25~485 USD를 징수하는 행정 수수료임. 다만, 한-미 FTA협정문 2.10조에 따라 한국산제품에 대해서는 면제

####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활용 모델

(예시)건당 미화 140,000불 수출시 FTA활용 前後 비교



### 03 | 활용 및 확산분야

-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산업분야
- 특히 관세가 0%인 물품은 FTA 발효 이후에도 관세혜택이 없어 별도로 특혜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한-미 FTA 활용할 필요성 존재

## 한미 FTA의 또다른 경제적 효과 : 물품취급수수료

- 한미 FTA협정문 제2.10조) ④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 미국 관세 및 국경보안청(The U.S. Customs Border and Protection)이 수입물품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비관세 행정수수료

구분	세부내용		
법적근거	통합예산총괄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		
징수방법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증가세)		
제외국가	①NAFTA ②이스라엘 ③미국속령의 제품 ④최빈국가의 제품 ⑤카리브연안국가		
적용요율	화물 금액(\$)	적용요율	비고
	7,217 이하	USD25	최저 수수료
	7,217~140,012 미만	0.3464%	-
	140,012 이상	USD485	최대수수료